

202.51호

행정 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모든 주 비상시 기관의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준수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 또는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하기 하도록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명령 202.31호로 발령된,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지침을 지속하며 행정명령 202.41호에 포함된 일시 중지 및 지침, 행정명령 202.42호에 포함된 지침 및 행정명령 202.43에 포함된 일시 중지 및 지침을 지속하여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시 30일간 연장하며 다음을 제외합니다.

- 나소 카운티 행정법(Administrative Code) 제5-18.0(2)항은 더 이상 일시 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a항에 의거하여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의 연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8월 12일 수요일까지의 기간 일시 중지 또는 개정합니다.

- 등록된 공공 또는 무료 협동 도서관 자금 청원에 필요한 서명의 수를 공백 및 무효표를 제외하고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마지막 주지사 선거에서 주지사에게 대한 투표 총 수의 3.3%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법(Education Law)의 제259항의 세부조항 1. 그러한 청원은 예정된 선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공공 도서관 지역구 또는 특수 도서관 지역구 선거에 대한 지명 청원 수집을 규율하는 모든 주법, 규칙 또는 규정, 2020년 9월 15일 또는 차후 9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최될 도서관 신탁 관리자 선거에 대한 청원을 지명할 때 서명의 최소 임계값 요건이 교육법 또는 해당 도서관의 관리 법으로 정한 조항이 제공하는 최소 수의 70%와 일치하는 숫자가 되어야 하도록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그러한 청원은 예정된 선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